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4
----------	------

제출년월일 : 2001. 10. 1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수도설치와 관련조례 정비와 아울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시설확장 등 상수도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형건축물증가 및 실내수영장신설 등에 대비하여 중수도시설 정의 신설
(안 제2조6항)

나. 중수도시설의 설치 등의 급수공사의 승인조항 신설(안 제6조의3,4항)

다. 급수공사 자체의 인증 규정(안 제7조2항)

라. 사용료규정을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안 제26조)

마. 업종의 구분 중 높은 효율의 적용 규정세분화(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근거: 수질58442-10388(2001.03.24)호에 의거 중수도시설설치조례 개정 및 상수도요금현실화, 불필요한 조례개정

3. 입법예고 : 2001. 9. 5. ~ 2001. 9. 25.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제2조 제6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상수도관련 초급기술자 이상

제20조중 “사실소화용” 를 “소화용”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효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 영업용
2. 옥탕2종
3. 옥탕1종
4. 업무용
5. 가정용

제40조제1항제6호중 “사실 소화전”을 “소화전”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중 업무용란의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를 삭제하고 영업용란에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27 -

[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업종별		요금	비고
구분	단계별(톤)	(원)	
가정용	0~10	430	
	11~20	690	
	21~30	890	
	31~40	1,120	
	41~50	1,340	
	51이상	1,490	
업무용	0~20	740	
	21~50	880	
	51~100	1,090	
	101~300	1,380	
	301이상	1,560	
영업용	0~30	920	
	31~50	1,070	
	51~100	1,230	
	101~300	1,580	
	301이상	1,890	
육탕 1종	0~200	700	
	201~300	800	
	301~500	920	
	501~600	1,160	
	601이상	1,430	
육탕 2종	0~200	1,200	
	201~500	1,310	
	501~1000	1,450	
	1001이상	1,700	

신 · 구 조문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수도법 제17조의 규정</u>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 1. ~5.(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1조(목적) -----<u>수도법 제23조</u>----- ----- -----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5.(현행과 같음) <u>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u></p> <p><u>제6조의 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u> <u>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u> <u>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생략)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⑤(생략)</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생략) 1. (생략)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p> <p>②(생략)</p> <p>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포함한다. ②~③(생략)</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생략)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생략) 1.~3.(생략) 4.점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생략)</p>	<p>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현행과 같음)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한다 ③~⑤(현행과 같음)</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중에서 상수도관련 초급기술자 이상 ②(현행과 같음)</p> <p>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 ----- ----- ②~③(현행과 같음)</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현행과 같음) ②----- -----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지하수 ----- ----- ----- 5.(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지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u>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26조(요금) ----- -----<u>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로 한다</u>----- ----- -----</p>
<p>②(생략)</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생략)</p> <p>②<u>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u>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현행과 같음)</p> <p>②<u>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효율의 적용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u>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업용</u> 2. <u>옥탕2종</u> 3. <u>옥탕1종</u> 4. <u>업무용</u> 5. <u>가정용</u>
<p>제40조(정수처분)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u>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u> 7.~8. (생략) 9. <u>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u> 10.~13. (생략) <p>②(생략)</p>	<p>제40조(정수처분)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현행과 같음) 6. <u>소화전</u>----- ----- 7.~8. (현행과 같음) 9.(삭제) 10.~13. (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

신 · 구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업종별		요금 (원)	업종별		요금 (원)	
구분	단계별		구분	단계별		
가정용	기 본(0~10㎡)	3,690	가정용	0~10	430	
	초 과	11~20		580	11~20	690
		21~30		750	21~30	890
		31~40		950	31~40	1,120
		41~50		1,140	41~50	1,340
		51이상		1,270	51이상	1,490
업무용	기 본(0~20㎡)	12,570	업무용	0~20	740	
	초 과	21~50		750	21~50	880
		51~100		930	51~100	1,090
		101~300		1,170	101~300	1,380
		301이상		1,330	301이상	1,560
영업용	기 본(0~30㎡)	23,470	영업용	0~30	920	
	초 과	31~50		910	31~50	1,070
		51~100		1,050	51~100	1,230
		101~300		1,350	101~300	1,580
		301이상		1,610	301이상	1,890
옥탕1종	기 본(0~200㎡)	126,460	옥탕1종	0~200	700	
	초 과	201~300		610	201~300	800
		301~500		780	301~500	920
		501~600		990	501~600	1,160
		601이상		1,240	601이상	1,430
옥탕2종	기 본(0~200㎡)	173,320	옥탕2종	0~200	1,200	
	초 과	201~500		1,070	201~500	1,310
		501~1000		1,340	501~1000	1,450
		1001이상		1,700	1001이상	1,700

신·구 대비표

구 분	당 초	개 정(안)
업무용	<p><u>0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u></p> <p>0(생략) 0(생략) 0(생략) 0(생략) 0(생략) 0(생략)</p>	<p>0 삭제</p> <p>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p>
영업용	<p>0(생략) 0(생략) 0(생략) 신설</p>	<p>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p>